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 통 보

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미준수

조 치 부 서 인재성장부

관 련 자 ☆☆☆☆☆ ◇◇◇ △△, ☆☆☆☆☆ ◆◆◆ ▲▲, ★★★★★
□□□ ▽▽

내 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할 때에는 예술위원회 「행동강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요청 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준수 여부의 점검을 위하여 [별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참여내역 요청 및 회신결과'와 같이 예술위원회 직무 유관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위원회 임직원이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외부강의등에 참여한 내역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총 21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회신 받았다.

각 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임직원들이 내부 ERP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외부활동 내역과 대조한 결과 [표1]과 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총 8건의 활동내

역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1]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미준수(신고누락) 내역

연번	소속 (행위일자 부서명)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활동 유형	요청기관명	비고
1	○○○○○○	▼▼▼	2018.6.--	심사		퇴사
2	☆☆☆☆☆	◇◇◇	2018.10.--	심사		
3	☆☆☆☆☆	◇◇◇	2018.10.--	심사		
4	○○○○○○	▼▼▼	2018.11.--	심사		퇴사
5	☆☆☆☆☆	◇◇◇	2019.2.--	심사		
6	☆☆☆☆☆	◆◆◆	2019.3.--	심사		
7	☆☆☆☆☆	◇◇◇	2019.3.--	심사		
8	★★★★★	□□□	2019.4.--	심사		

※ 각 기관에 제출 요청한 자료 대상기간은 2018년 5월~2019년 4월에 해당

[관련자의 주장 및 판단]

퇴사자 1명을 제외한 관련자 3명을 대상으로 신고누락 사유 등을 소명 받은 결과 관련자들은 해당 활동에 대한 외부강의등 인지 부족, 요청기관의 촉박한 심사요청 등에 기인한 단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누락한 상기 8건 이외에 관련자들이 제출한 다른 외부강의등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자들이 해당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그 중 4회 신고를 누락한 관련자 1인에게는 엄중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수행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 3인을 대상으로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 및 제48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주의’를 촉구 하고 **[주의]**
- ②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퇴사자 1명의 위반행위를 통보하오니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참여내역 요청 및 회신 결과

연번	기관명	회신여부	회신건수(건)
1	강원문화재단	미회신	-
2	경기문화재단	회신	2
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회신	7
4	고양문화재단	미회신	-
5	광명문화재단	미회신	-
6	광주문화재단	미회신	-
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회신	-
8	국립고궁박물관	미회신	-
9	국립국악원	미회신	-
10	국립극단	회신	9
11	국립세종도서관	회신	1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회신	-
13	국립무용단	미회신	-
14	국립중앙극장	미회신	-
15	국립중앙도서관	미회신	-
16	국립한글박물관	회신	1
17	국립현대미술관	미회신	-
18	국악방송	회신	2
19	대구문화재단	미회신	-
20	대전문화재단	회신	6
21	부산문화재단	회신	1
22	서울문화재단	미회신	-
23	세종문화회관	미회신	-
24	세종시문화재단	미회신	-
25	아시아문화원장	미회신	-
26	여주세종문화재단	미회신	-
27	예술경영지원센터	미회신	-
28	예술의전당	미회신	-
29	용인문화재단	미회신	-
30	울산문화재단	미회신	-

31	인천문화재단	미회신	-
32	인천서구문화재단	회신	2
33	전국지역문화재단협의회	회신	0
34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회신	15
35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신	1
36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회신	3
37	제주문화예술재단	회신	6
38	충남문화재단	회신	2
39	충북문화재단	회신	4
4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미회신	-
41	한국과학창의재단	회신	2
42	한국문학번역원	미회신	-
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회신	-
4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회신	5
4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신	7
46	한국문화재단	미회신	-
47	한국문화정보원	미회신	-
48	한국영상자료원	회신	3
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회신	-
5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회신	-
5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회신	3
52	한국저작권위원회	미회신	-
5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회신	-
54	한국콘텐츠진흥원	미회신	-
55	해외문화홍보원	미회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미준수

조 치 부 서 인재성장부

관 련 자 ♠♠♠♠♠ ◆◆◆

내 용

예술위원회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 제 27조제2항에 따라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점검 대상기간 내 ERP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총 284건의 외부활동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총 8건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이 규정에서 명시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외부강의등 지연신고 내역

연번	소속 (행위일자 부서명)	성명	외부강의등 활동일자	신고일자	지연일수	요청기관명
1	♠♠♠♠♠	◆◆◆	2018.6.--	2018.10.--	114	
2	♡♡♡♡♡	♣♣♣	2018.10.--	2018.10.--	5	
3	♡♡♡♡♡	☆☆☆	2018.10.--	2018.10.--	5	
4	♣♣♣♣♣	★★★	2018.12.--	2018.12.--	15	
5	♥♥♥♥♥	△△△	2019.1.--	2019.1.--	1	
6	▣▣▣▣▣	▲▲▲	2019.2.--	2019.2.--	5	
7	▣▣▣▣▣	▲▲▲	2019.4.--	2019.4.--	3	
8	♥♥♥♥♥	▽▽▽	2019.5.--	2019.5.--	14	

[관련자의 주장 및 판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지연 사유 등을 소명 요청한 결과 지연사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부강의등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경우였고, 또 다른 유형은 업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활동한 사항이어서 외부강의등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이 사례비 지급 사실을 인지한 후 조속히 해당 활동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였고, 지연사유를 보고서에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외부강의등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는 사례금 지급여부, 휴일 활동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외부강의등 활동에 따른 신고의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인식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식 환기가 필요하다.

단, 100일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고가 지연된 1건의 경우 활동일자를 기준으로 약 2주 전인 2018. 6. 12. 일자에 인사담당부서에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외부활동 신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사 안내 공지를 실시하였다는 점,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약 한 달 전인 2018. 9. 17. 일자에 외부강의등 활동 신고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사 청렴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활동일자와 신고일자 사이의 기간 동안 관련자가 본인이 수행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건의 경우 신

고지연에 대한 관련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외부활동 신고를 장기간 지연한 관련자 1인에게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 및 제48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 기능 개선
소 관 부 서 인재성장부, 재무관리부
조 치 부 서 재무관리부
내 용

예술위원회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포함한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를 신고할 경우 ERP시스템을 통하여 사례금 금액을 입력하도록 기능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외부활동 업무 소관부서였던 기획조정부의 공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ERP시스템을 통하여 외부활동을 신청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ERP시스템을 통한 외부활동 신고내역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례금 신고와 관련된 시스템 기능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현재 ERP시스템 내 외부활동신청, 외부활동성과보고서, 보완신고기능 메뉴에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비 신고를 위하여 '사례비 지급명세' 입력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입력란에 사례금 등의 상세명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저장한 후 승인요청(결재)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신고서가 제출된다. 이렇게 ERP시스템 입력란에 사례금을 입력하여 승인요청을 하면 결재문서 생성 시 해당 값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결재문서 내 입력이 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비 지급명세’ 항목이 ERP시스템 내 필수입력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들이 사례비 지급명세를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지 않고 결재문서가 생성된 이후 입력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결재문서 상에 직접 입력된 사례금은 ERP시스템을 통한 조회와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점검대상 기간 내 접수된 신고내역 총 284건 중 85건이 이처럼 결재문서 상에 사례금을 별도로 기재한 신고 건으로 확인되었다.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수령한 사례금 내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관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ERP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사례금이 조회·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한 내·외부의 점검이나 모니터링 시 사례금 항목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외부활동 제도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례금 명세를 ERP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해당 내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임직원이 ERP시스템을 통하여 외부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사례금 명세가 시스템에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외부활동 성과공유 제도 정비
소 관 부 서 인재성장부
조 치 부 서 인재성장부
내 용

예술위원회 직원은 출강, 수강, 학회·세미나 참여, 기타 외부활동에 관한 신청과 승인을 위하여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이하 ‘외부활동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부활동을 수행한 직원은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외부활동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연구, 학문교류, 직무관련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활동 수행에 따라 창출·생성된 산출물과 성과를 기관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기관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공유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심사나 평가, 의결 등의 활동은 출강이나 수강, 학회·토론·세미나 참여 등의 활동과는 다르게 그 성격 상 성과공유의 대상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점검대상 기간 내 신고된 외부활동 284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외부활동이 심사, 평가, 의결 유형(195건, 68.7%)¹⁾

1) 심사 137건, 평가 57건, 의결 1건

으로 확인되었는데, 각 활동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공모사업 심의, 채용 전형 심사,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등으로 성과공유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에 따라 작성된 성과보고서 또한 활동 참여에 대한 단순 결과보고 형식²⁾에 그치고 있어 성과공유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나아가 외부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산출물이나 성과자료 또한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게끔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행정력 낭비 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성과공유의 대상이 되는 외부활동 유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외부활동 수행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외부활동 성과공유 제도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련 지침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활동 성과공유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및 보고의 대상이 되는 외부활동 유형을 조정하는 등 외부활동 성과공유 제도와 관련 지침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2) ~ 심의 참석, ~ 회의 참석, ~ 평가 등으로만 작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외부강의등 외부활동 신고 관리체계 강화
소 관 부 서 인재성장부
조 치 부 서 인재성장부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9. 28. 일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하여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공직자의 고액의 사례금 수수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각 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위원회 또한 행동강령 제27조 및 제28조 조항을 통하여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의 활동에 따른 대가로서 법과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 총액을 포함한 활동 상세 명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 점검대상 기간 중 신고누락, 지연신고 등의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점검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외부활동 신고절차와 신고사항, 내부 신고시스템 활용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잘못 인지³⁾하고 있거나, 사례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요청기관으로부터 받은 실비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을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현재 예술위원회는 임직원이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내부 ERP시스템을 통하여 외부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 복무관리 사항에 준하여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위원회 업무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외부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결재)을 받도록 정하는 등 외부활동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령과 규정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식 환기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제도의 교육·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예방과 신고내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신고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